

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※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 (가스시설 시공업자)	상호:	등록번호:
	대표자:	사업자등록번호: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	전자우편주소:	검사 희망 연월일:

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 시설	상호:	사업자등록번호:
	대표자:	전화번호:
	소재지:	
	전자우편주소:	

세부 내용	영업장 면적	[] 100㎡ 미만	[] 100㎡ 이상
	업 태:		
	건축물 연면적	[] m ²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	수수료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처 리 절 차

